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여부	

산림산업정책 국 장	차 장	청 장	장 관
협 조	차 관		
	농 촌 정 책 과 장		
	기 획 조 정 관		
	법무감사담당관		

※ 보고자 : 목재산업과장 임영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11.

산 림 청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목 재 의 지 속 가 능 한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개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 등록 시설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목재생산업체의 시설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목재생산업체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2개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 채 (벌 채 량 제한 없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 채 (벌 채 량 연간 5,000m ³ 이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 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제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제재업 제1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제재업 제2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한 목재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제재업 제3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숯, 성형숯,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나무가루)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제재업 제4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비고>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하여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기준의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목재산업과	
연 락 처	(042) 481 - 8875